

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서

접수번호		접수일	처리기간 10일
신고인 (대표자)	성 명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
제조업소명			
소재지	본사	(전화번호 :)	
	제조소	(전화번호 :)	
제 조 관리자	성 명	면허번호	
	생년월일	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	
제 조하려는 품목명			
제 조 대 상	동물용	☐ 농림축산용	☐ 양봉용·양잠용·애완용(관상어 제외)
의약외품의 용도	☐ 농수산 검용	☐ 수산(관상어 포함) 전용	

「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」 제4조제1항에 따라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업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농림축산검역본부장·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

구비 서류	신고인(대표자) 제출서류	1. 「약사법」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각 1부 2. 제조관리자 승인서 사본 1부(제조관리자 승인을 받은 사람을 제조관리자로 두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3. 제조시설의 구조 및 설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명세서(구조개요 및 유해물질 배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방지시설명세를 포함합니다) 4. 동물용의약외품 제조품목허가신청서 또는 제조품목신고서	수수료 10,000원
	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만 해당합니다) 2. 제조관리자의 약사면허증(제조관리자가 약사인 경우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 또는 제조관리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고인(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

제조관리자 (서명 또는 인)

처 리 절 차

신고서 작성	→	접 수	→	해당과 이송	→	검 토	→	결 재	→	신고증 작성
신고인		농림축산검역본부 ·국립수산물품질 관리원(민원실)		농림축산검역본부 ·국립수산물품질 관리원		농림축산검역본부 ·국립수산물품질 관리원		농림축산검역본부 ·국립수산물품질 관리원		농림축산검역본부 ·국립수산물품질 관리원(교부)